

공원시설이용 운영규정

개정 201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숲 공원시설이용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이용료)

1. 공원 공간별 시설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2. 공간별 공원시설이용은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된 '붙임1'의 공간별 공원 이용 금액을 따른다.
3. 공원이용자는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유희공간: 사용일 15일 전 / 야외공간: 사용일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이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이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 후 사용일 전일까지 공원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7.1.자)에 따라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3조(공원시설이용료)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원시설이용료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이용료 전액감면
 - 가. 시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나. 재단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기타 서울숲위원회가 공원시설이용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공원이용허가 기준)

재단은 공원시설이용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공원시설이용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일정의 수용 가능성·행사 내용의 공공성 및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시설이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운영 목적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의 공원시설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2.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공원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원

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원 운영에 있어 방호 및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및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숲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원시설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공원시설이용허가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6.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의 경우
 - ① 재단은 공원시설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공원시설이용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숲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원시설이용 취소 및 계약 해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원시설이용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시설이용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공원시설이용허가 후 공원시설이용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2. 공원시설이용 허가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원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원시설이용자가 공원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4. 공원 공간별 사용수칙과 공원시설이용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재단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6조(공원시설이용 계약의 체결)

공원시설이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원시설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원시설이용계약 취소)

1. 공원시설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원시설이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2. 공원시설이용자가 공원시설이용 취소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한 경우 다음의 <붙임 2>의 구분에 따라 공원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 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재단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2.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시설사용 종료 후, 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공원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재단은 공원시설이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원시설이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공원시설이용자는 재단의 사전허가 없이 공원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원상복구)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옥외 잔디지역은 이용 전 잔디보호용 매트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 후 잔디가 현저하게 손상된 경우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서울숲 공원시설이용 신청서-1.사전협의 및 조치사항-④번 규정에 따른다.
3. 이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서울숲공원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해당비용을 청구한다.

제10조(사용시설의 정리)

1.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대기, 준비, 철거 작업 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제11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시설이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공원시설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공원시설이용허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공원시설이용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시설이용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공원시설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공원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공원 내에서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③ 공원시설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공원시설이용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재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공원시설이용자는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⑥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및 화기, 화약, 유류 및 발화물질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행위
3.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규정의 적용)

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공원시설이용허가 및 계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 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의 미숙지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원시설이용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공원시설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법정사항 준수)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서울숲 공원시설 이용료

1. 공원시설 현황

구분	장소	면적	부대시설	용도
유휴공간 10:00-17:00 (운영시간 외 사용은 협의 필요)	커뮤니티센터 1층 전시실	179.9㎡	프로젝터, 테이블25, 의자40	전시, 체험행사
	커뮤니티센터 2층 가온방	32.4㎡	프로젝터, 테이블8, 의자16	16명 미만 세미나, 워크숍
	커뮤니티센터 2층 마루방	35.4㎡	온돌마루, 싱크대	20명 미만 세미나, 워크숍
	습지생태원	40.5㎡	프로젝터, 테이블12, 의자24	
야외공간 9:00-18:00 (운영시간 외 사용은 협의 필요)	가족마당	10,000㎡	무대, 전기시설(5KW미만)	공연, 행사, 체험행사
	야외무대	4,000㎡	무대, 전기시설	공연, 행사

2. 공원시설장소사용 공원이용료

(시간대별 공원이용료 | 최종납부금액은 공원이용료 총액을 확인)

구분	항목	시간	금액(원)	VAT(10%)	공원이용비 총액 (원/VAT포함)	비고
가족마당	평일	2	414,400	41,440	455,840	2시간 기준 ※ 운영시간: 9:00-18:00 ※ 운영시간 외 (야간사용은 협의 필요)
		3	518,000	51,800	569,800	
		4	621,600	62,160	683,760	
		5	725,200	72,520	797,720	
		6	828,800	82,880	911,680	
		7	932,400	93,240	1,025,640	
		8	1,036,000	103,600	1,139,600	
		9	1,139,600	113,960	1,253,560	
		10	1,243,200	124,320	1,367,520	
		주말	2	538,720	53,872	
	3		673,400	67,340	740,740	
	4		808,080	80,808	888,888	
	5		942,760	94,276	1,037,036	
	6		1,077,440	107,744	1,185,184	
	7		1,212,120	121,212	1,333,332	
	8		1,346,800	134,680	1,481,480	
	9		1,481,480	148,148	1,629,628	
	10	1,616,160	161,616	1,777,776		
야외무대	평일/주말	2	100,000	10,000	110,000	2시간 기준

		3	125,000	12,500	137,500	※ 운영시간: 9:00-18:00 ※ 운영시간 외 (야간사용은 협의 필요)
		4	150,000	15,000	165,000	
		5	175,000	17,500	192,500	
		6	200,000	20,000	220,000	
		7	225,000	22,500	247,500	
		8	250,000	25,000	275,000	
		9	275,000	27,500	302,500	
		10	300,000	30,000	330,000	

※ 세금계산서 발행

3. 유희공간 공원시설이용료

(시간대별 공원시설이용료 | 최종납부금액은 공원시설이용료 총액을 확인)

구분	항목	시간	금액(원)	VAT(10%)	공원이용비 총액 (원/VAT포함)	비고
전시실	평일·주말 (주간기준)	2	30,000	3,000	33,000	※최소 2시간부터 예약 가능 ※ 운영시간에만 대관 가능
		3	37,500	3,750	41,250	
		4	45,000	4,500	49,500	
		5	52,500	5,250	57,750	
		6	60,000	6,000	66,000	
		7	67,500	6,750	74,250	
가온방 마루방 습지생태원	평일·주말 (주간기준)	2	20,000	2,000	22,000	※ 운영시간 : 10:00-17:00 ※ 운영시간 외 야간사용은 협의 필요
		3	25,000	2,500	27,500	
		4	30,000	3,000	33,000	
		5	35,000	3,500	38,500	
		6	40,000	4,000	44,000	
		7	45,000	4,500	49,500	

※ 공원시설이용료 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을 원칙



서울숲 공원시설 이용료 취소 환불 규정

1. 공원시설 이용료 취소 반환

구분	장소	기간	반환율
유휴공간	커뮤니티센터 1층 전시실	10일전	100% 반환
		9일전 ~ 6일전	80% 반환
		5일전 ~ 1일전	60% 반환
	커뮤니티센터 2층 가온방	10일전	100% 반환
		9일전 ~ 6일전	80% 반환
		5일전 ~ 1일전	60% 반환
	커뮤니티센터 2층 마루방	10일전	100% 반환
		9일전 ~ 6일전	80% 반환
		5일전 ~ 1일전	60% 반환
	습지생태원	10일전	100% 반환
		9일전 ~ 6일전	80% 반환
		5일전 ~ 1일전	60% 반환
야외공간	가족마당	45일전	100% 반환
		30일전 ~ 21일전	80% 반환
		20일전 ~ 1일전	60% 반환
	야외무대	30일전	100% 반환
		15일전 ~ 11일전	80% 반환
		10일전 ~ 1일전	60% 반환
공통	사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공원시설이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남은 일수의 50% 반환)		